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47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이주희 · 남인순 · 박정현
문진석 · 서삼석 · 이수진
노종면 · 정혜경 · 모경종
한민수 · 권향엽 · 양부남
조계원 · 김동아 · 최혁진
정태호 · 김 현 의원
(17인)

제안이유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2026년에 펴낸 ‘유언증서 등록·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사건 수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음. 또 상속재산 분할사건의 소송물 가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부동산 가치의 급증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비혼과 고령 1인 가족 증가로 상속에 대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상속재산의 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2019년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유언의 분실·훼손·위조·변조 등의 우려가 있으며 유언장 작

성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민법」 제1065조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함)의 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언증서의 분실·훼손·위조·변조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유언보관소 설치 등(안 제4조)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둬.

다. 유언증서의 보관 신청(안 제6조)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음.

라. 유언등록부의 작성과 보관(안 제7조)

- 1) 유언증서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유언등록부를 두고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함.
- 2) 유언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유언증서를 「전자정부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보관함.

마. 유언자의 열람(안 제8조)

유언자는 본인의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에서 유언증서를 열람할 수 있음.

바. 유언증서 보관 신청의 철회(안 제9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증서 보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보관관은 지체 없이 해당 유언자에게 유언증서를 반환하고 유언등록부 등록 내용과 유언증서의 전자화문서를 삭제하여야 함.

사. 유언증서의 보관사실 통지(안 제12조)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를 보관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유언자가 지정한 사람 또는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 등에게 유언증서 보관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아.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 발급(안 제13조)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의 열람 또는 유언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자. 유언증서의 반환(안 제14조)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보관한 유언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차. 유언증서의 폐기(안 제15조)

유언자가 사망한 날부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카. 이의신청(안 제16조)

유언보관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실·훼손·위조·변조의 위험으로부터 유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언증서”란 「민법」 제1065조에 따른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를 말한다.
2. “유언자”란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유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유언보관소의 설치

제4조(유언보관소 설치 등) ①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하 “보관사무”라 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정법원(그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가정법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을 말하고, 그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언보관소(이하 “유언보관소”라 한다)를 둔다.

② 가정법원장(유언증서 보관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법원장(유언증서 보관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보관사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유언보관관(이하 “유언보관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유언보관소의 조직 및 정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유언보관관) ① 유언보관관은 보관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유언보관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유언증서의 보관

제6조(유언증서의 보관 신청) ①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

면 어디서나 유언증서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언증서의 보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직접 유언보관소에 방문하여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와 유언보관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유언증서는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작성한 후 밀봉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한다.

④ 유언보관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언증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
2. 유언자의 성명, 출생 연월일, 주소
3. 수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유언집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유언증서 보관사실을 통지받을 사람
6. 유언증서를 반환받을 사람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유언보관관은 유언보관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후 유언자가 보는 앞에서 이를 밀봉하여야 한다.

⑦ 유언증서는 유언보관소의 시설 내에 보관하며, 이를 위한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유언등록부) ① 유언증서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유언등록부(이하 “유언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유언등록부는 유언보관관이 작성하고, 법원행정처가 관리·운영한다.

③ 유언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언자별로 등록한다.

1. 유언자의 성명, 출생 연월일, 주소
2. 유언증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
3. 보관 신청 연월일
4. 유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과 보관번호
5. 수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6. 유언집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유언증서 보관사실을 통지받을 사람
8. 유언증서를 반환받을 사람
9.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10. 유언증서를 반환 또는 폐기한 경우 반환일 또는 폐기일

④ 유언등록부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⑤ 가정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은 유언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유언증서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유언등록부와 전자화문서의 효율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하여 법원

행정처에 전산유언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

제8조(유언자의 열람) ① 유언자는 본인의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에서 유언증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위한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및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유언증서 보관 신청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에 직접 방문하여 유언증서 보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보관관은 제1항에 따른 철회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제1항에 따라 철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유언자에게 유언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를 반환함과 동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내용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철회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유언증서 반환과 유언등록부 삭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유언증서, 유언등록부 및 유언증서의 전자화문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유언자 사망 후의 절차

제11조(유언증서 검인 제외) 이 법에 따라 유언증서가 신청·보관된 경우에는 「민법」 제109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유언증서의 보관사실 통지) ①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를 보관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유언자가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언자가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라 통지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유언자의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관계상속인등”이라 한다)에게 한다.

③ 누구든지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보관관에게 사망한 특정한 사람이 자신과 관계있는 내용의 유언을 보관한 바 있는지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언보관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방법과 절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유언증서 보관 증명서) ①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의 열

람 또는 유언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언자의 인적 사항
2. 유언의 성립 일자
3. 유언의 방식
4. 보관소 및 보관번호
5. 보관 일자
6. 유언자와 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관계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의 교부 신청과 수령은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할 수 있다.

④ 유언보관관은 제1항에 따라 유언증서를 열람시키거나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관계상속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언증서의 열람 또는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 교부의 신청 방법, 절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유언증서의 반환)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보관한 유언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유언증서의 폐기) ① 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유언자

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날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유언증서의 폐기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이의신청) ① 유언보관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유언보관관이 속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언보관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유언보관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유언보관관은 이의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7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유언보관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